

항목:	<u>학교 건물 내 정치 활동</u>	발행: 2009/06/22	번호: D-130
제목:	후보, 선출공직자, 정치단체의 학교 건물 사용 및 정치적 캠페인과 선거 관련 학교 고용인 및 직원의 품행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4년 1월 15일자 규정 D-130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변경내용: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현 교육청 구조를 반영합니다.
- 선출된 공직자 및 공직 출마자의 학교 수업시간 중 학교 방문 절차를 명시합니다.
- 정치적 지지와 관련한 교직원 우편함 및 게시판 사용에 대해 명시합니다.
- 학교 교직원은 업무 중이거나 학생과 만날 때 특정 후보, 다수의 후보, 후보 명부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옹호하는 버튼, 핀, 옷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물건도 착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개요

본 규정은 후보, 선출공직자, 정치단체의 학교 건물 사용 및 정치적 캠페인과 선거 관련 학교 고용인 및 직원의 품행을 관장합니다.

서문

학교 건물은 커뮤니티 또는 정치 표현의 목적을 위한 공공 포럼이 아닙니다. 다음을 관장하는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1) 선출된 공직자, 선출직 출마후보 또는 이러한 공직자나 후보를 위해 일하는 단체는 학교 수업시간과 수업이 없는 시간 모두 교육청 빌딩 사용 또는 출입¹; (2) 학교 고용인, 직원 또는 스태프와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태프 및 학교 시설, 설비 또는 비품 사용;² 및 (3) 학교 고용인, 직원 또는 스태프와 공무원의 정치적 캠페인 및 선거와 관련한 품행³

I. 학교 수업 시간

A. 선출된 공직자 및 공직 출마자의 방문

커뮤니티 및 뉴욕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선출된 공직자의 학교 수업시간 중 방문은 선출된 리더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정 기능인 공교육 제공을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출직 출마자의 방문은 학생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투표를 하게 될 정보를 가진 책임있는 시민으로써 익숙해져야 할 사람 및 시각에 노출되는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문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고 정치적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학교장이 명확히 승인하고 승인이 불합리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조건으로 선출된 공직자는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장 및 네트워크 리더에게 방문요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이러한 방문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이 명확히 승인하는 조건으로 선출직 출마자 또는 재선 출마 선출직 공직자는 학교 수업 시간 중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방문 요청은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장 및 네트워크 리더에게 방문요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역사, 사회, 공민학 등 관련 학습과 연결되어야 하며 학교의 교육적 목표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최대한 정보를 얻고 학교가 개인 후보 또는 특정 관점을 후원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학생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문이 학교의 교육적 환경을 저해한다면 학교 수업 시간 중 방문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I.A.2에도 불구하고 상기 섹션 I.A.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선출마자를 포함한 공직 출마자는 예비선거 및/또는 선거 전 역일 60일 이내에는 교육청 관할 학교 건물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¹ 본 규정 내에서 학교 건물은 교육청 관할 학교 건물 또는 임대 학교 공간을 포함합니다.

² 본 규정 내에서 "직원," "고용인," 또는 "스태프"는 뉴욕시 교육청 또는 커뮤니티 학교과 계약 (또는 하청)을 맺은 커뮤니티 단체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뉴욕시 교육청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³ 본 규정은 학생의 정치적 품행 또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담당실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Media Relations)는 반드시 선출직 공직자 또는 선출직 출마자의 방문을 미리 통보받아야 합니다.

B. 학교 시설, 설비 및 비품 사용

본 규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는 학교 시설, 설비 및 비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위한 개인, 그룹, 단체, 위원회 등의 수업/업무시간 중 교육청 학교 사용은 금지됩니다.
2. 학교 건물에서 선출직 공직자, 특정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위한 선거운동, 포럼,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출직 공직자,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지지하는 자료를 하기 섹션 I.B.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건물에서 배포, 게시 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와 학군 및 본청 사무실의 교직원 우편함 및 노조 게시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학교와 학군 및 본청 사무실이 교육 관련 자료 및 기타 학교 관련 정보를 배포; 그리고 (2) 노조가 노조 관련 자료를 배포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 a.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 선출을 옹호하는 자료를 교직원 우편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 b.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 선출을 옹호하는 자료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노조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5. (a)와 (b)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후보 지지가 포함된 자료는 교직원 우편함 또는 노조 게시판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6. 아이들에게 배포되는 학부모회 유인물은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후보를 포함한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 지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7. 학교장은 허용되지 않는 자료가 게시, 배포, 전시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가집니다.
8. 교육청의 복사, 커뮤니케이션, 전자 또는 기타 기기는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를 위한 정보 제작, 복사, 녹음, 배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C. 직원 및 고용인 품행

1. 근무 중 또는 학생과 접촉할 때 모든 학교 교직원은 모든 후보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이거나 학생과 만날 때 학교 교직원은 특정 후보, 다수의 후보, 후보 명부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옹호하는 버튼, 핀, 옷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물건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무시간 중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단체/위원회를 위한 기금모금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 모든 직원의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진정서 서명 수집 및 진정서와 투표 요청도 포함됩니다. 노조 대표로 지정된 학교, 학군, 본부 직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노조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a. 계약상 개인업무 휴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선거운동을 "개인 업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 참여로 인해 결근하는 학교 교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 모든 학교 교직원은 선거위원회의 유급 직책 활동을 위해 개인 업무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위원은 (i) 공적 권한 또는 영향력을 선거 결과 또는 직위 추천을 방해 또는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 교육청 직원이 정치적 목적 또는 캠페인 참여를 위해 정당, 위원회, 단체, 에이전시 또는 개인에게 모든 금액을 지불하거나 빌려주거나 기부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강제, 강제 시도 또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iii) 섹션 II (방과후 학교 사용)의 규율 및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청 시설, 설비 (전화, 팩스, 우표, 사무용품 포함), 직원, 공식 편지지 또는 기타 교육청 리소스를 모든 정치/캠페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교육청 직위 및 직책을 모든 정치/캠페인 활동과 관련하여 연관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커뮤니티 교육감에게 담당하는 커뮤니티 학군에서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는 위원회 비서에게 정치적 기부 또는 정치활동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vi) 정치적 기부 또는 정치 활동에 대한 도움을 모든 교육청 직원 또는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는 커뮤니티 학군에서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선별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활동은 선별 요청이며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학군의 고용인 또는 직원에게 시키는 것이 금지된 활동입니다.
 - i. 개인적인 기여 요청 (직접 또는 전화로);
 - ii. 학교 또는 기타 교육청 시설로 기금마련 요청 (우편) 발송;
 - iii. 교육청 고용인 또는 공무원의 직책을 명시하는 기금마련 요청 (우편) 발송;
 - iv. 공개되지 않은 교육청 목록을 이용한 기금마련 요청 (우편) 발송.
 - d.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위원회 후보는 정치적 후원 또는 캠페인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본 규정은 학교 직원이 합법적인 학습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 이슈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I. 방과 후 학교 사용

학교 시간 이외의 학교 건물 사용은 뉴욕주 교육법 섹션 414가 관장하며 교육청의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모든 학교 시간 이외의 학교건물 사용 허가는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A. 다음 II.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위한 개인, 그룹, 단체, 위원회 등의 수업/업무시간 이외의 교육청 학교 사용은 금지됩니다.
- B. 다음 II.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수업/업무시간 이외에 학교 건물에서 선출직 공직자, 특정 후보, 후보들, 후보군 또는 정치 단체/위원회를 위한 선거운동, 포럼,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C. **모든 후보의 참여를 초대할 후보자 포럼은 허가됩니다.**
- D. 후보자 포럼 신청 허가에는 반드시 모든 후보가 초대되었다는 서면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E. 재선출마 선출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 후보는 공적 권한 및 개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청 학교 건물을 예비선거 및/또는 선거 전 역일 60일 이내에 학교 근무시간 이후 교육청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준수

- A.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 직원 또는 고용인은 위반을 신고한 다른 직원, 고용인, 학부모, 학생 또는 기타 인물에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 C. 위반은 다음 담당실 두곳 모두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Special Commissioner of Investigation
25 Broadway, 8th Floor
New York, NY 10004
212-510-1500

Office of Legal Services
52 Chambers Street – Room 308
New York, NY 10007
212-374-6888

IV.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i>Office of Legal Services</i>	팩스:
212-374-6888	뉴욕시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 Room 308 New York, NY 10007	212-374-5596